

10.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시

§ 지특법 19조

1. 감면신청서 및 취득세신고서
2. 보육시설인가증(설치운용자와 부동산소유자 일치/대표자=취득자)
3. 부동산이용계획서 (도장날인)
4. 매매계약서 + 신고필증